

# -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474
----------	------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대구문학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인 이육사기념관을 포함하여 대구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운영의 위탁 등)

○ 필 요 성

- 대구는 고월(이상희), 상화(이상화), 빙허(현진건) 등 걸출한 문인을 배출한 문향의 도시로 문인들의 삶의 흔적 및 지역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기 위해 2014. 10. 30.부터 대구문학관을 개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대구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고, 반월당지역 주택조합에서 중구 남산동에 건립 중인 이육사기념관이 '22년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사무에 유사 사무인 이육사기념관 관리·운영 사무를 포함(추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48㎡) 시설인 이육사기념관을 별도 위탁함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대구문학관에서 소장 중인 이육사 시인 관련 자료의 연계전시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 대구문학관(이육사기념관 포함)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 위탁이 필요함.

다. 위탁대상사무 및 범위 : 대구문학관(이육사기념관 포함) 관리 및 운영 전반

라.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시설 현황

1) 대구문학관

- 위 치 : 중구 중앙대로 449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 전체규모 : 지하1층·지상5층, 대지면적 1,302.1㎡, 연면적 3,496.05㎡
- 위탁대상 : 지상3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5층은 중구청과 공동운영

구분	면적		공 간 내 역
	㎡	평	
지하 1층	729.11	221	사무실, 수장고, 녹향,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지상 1층	733.8	222	향촌문화관
지상 2층	677.36	205	향촌문화관
지상 3층	605.95	184	상징조형물, 대구문학아카이브 명예의전당(이상화,현진건,이상희의방), 영상관, 체험관
지상 4층	657.42	199	문학서재, 동화감상방, 동화구연방,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지상 5층	99.41	30	창고, 옥상

○ 인원현황 : 6명(관장1, 직원5) ※2022년 기준

2) 이육사기념관

○ 위 치 : 중구 남산동 645번지 일원(반월당 주거복합신축공사 현장 內 공개공지)

○ 위탁대상 : 지상1층, 주변 쉼터

구분	면적		공 간 내 역
	m <sup>2</sup>	평	
지상 1층	48	14	전시관, 관리실, 화장실, 복도
주변 쉼터	168	51	주변 쉼터

바.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최초위탁 : 2014. 7. 30.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본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650,0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90	기획전시, 상설전시, 대구문학로드, 문학강연,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
	회의 및 심사비	5	운영위원회 회의 및 심사비 등
	홍보	5	홍보비 (인쇄물, 기념품 등)
<b>사업비 소계</b>		<b>100</b>	
관리비	시설유지 관리비	212	건물유지 관리비 부담액(2022년 수준)
<b>관리비 소계</b>		<b>212</b>	
운영비	인건비	300	관장 및 직원,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부가급여, 퇴직급여 및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등 포함)
	일반운영비	38	일반·기타운영비
<b>운영비 소계</b>		<b>338</b>	
<b>총 합계</b>		<b>650</b>	

○ 2022년 성과평가내역(평가기관 : (주)가치경영원)

- 종합평점 87.86점(나등급)

※ 등급부여기준

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 점	90점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 붙임 2

**붙임 1****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학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2**

**추진계획**

-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대구문학관」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22년 11월 준공 예정인 이육사기념관을 포함하여 대구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現 수탁기관 : (사)대구작가콜로퀴엄('20.1.1. ~ '22.12.31)

### I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5조
-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운영의 위탁 등)

### II 추진배경

- 대구는 고월(이장희), 상화(이상화), 빙허(현진건) 등 걸출한 문인을 배출한 문향의 도시로 문인들의 삶의 흔적 및 지역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기 위해 舊상업은행 대구지점을 리모델링하여 2014. 10. 30.부터 대구문학관을 개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대구문학관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고, 반월당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 중인 이육사기념관(중구 남산동)이 '22년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 대구문학관 및 이육사기념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관리·운영 위탁이 필요함.

### Ⅲ 추진 방향

-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사무에 유사 사무인 이육사기념관 관리·운영 사무를 포함(추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48㎡) 시설인 이육사기념관을 별도 위탁함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대구문학관에서 소장 중인 이육사 시인 관련 자료의 연계전시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Ⅳ 위탁 개요

○ 대상시설

1. 대구문학관

- 위치 : 중구 중앙대로 449
- 전체규모 : 지하1층·지상5층, 대지면적 1,302.1㎡, 연면적 3,496.05㎡
- 위탁대상 : 지상3층, 지상4층 ※ 지하1층, 지상5층은 중구청과 공동운영

구분	면적		공 간 내 역
	㎡	평	
지하 1층	729.11	221	사무실, 수장고, 녹향,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지상 1층	733.8	222	향촌문화관
지상 2층	677.36	205	향촌문화관
지상 3층	605.95	184	상징조형물, 대구문학아카이브 명예의전당(이상화, 현진건, 이장희의방), 영상관, 체험관
지상 4층	657.42	199	문학서재, 동화감상방, 동화구연방,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지상 5층	99.41	30	창고, 옥상

2. 이육사기념관

- 위치 : 중구 남산동 645번지 일원(반월당 주거복합신축공사 현장 내 공개공지)
- 위탁대상 : 지상1층, 주변 쉼터

구분	면적		공 간 내 역
	㎡	평	
지상 1층	48	14	전시관, 관리실, 화장실, 복도
주변 쉼터	168	51	주변 쉼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인력 : 6명(관장1, 직원5) ※2022년 기준
- 위탁범위 : 대구문학관(이육사기념관 포함)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 지원예산
  - ('21년) 585백만원, ('22년) 590백만원, ('23년) 예산요구액 650백만원
  - ※ 지원예산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절차
  - 위탁 추진계획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자 및 심사위원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수탁자 선정 → 계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 시설 물 인계인수 → 위수탁 개시

## V

### 수탁기관 선정

- 공고기간 : 2022. 10월말(예정)
-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정(별도 계획수립)
- 응모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 성 : 6 ~ 9인 이내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가
  - 위촉방법 : 공개모집(공고)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 고용자의 고용·노동조건
-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 수탁기관의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VI

**위탁운영비 산정(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90	기획전시, 상설전시, 대구문학로드, 문학강연,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
	회의 및 심사비	5	운영위원회 회의 및 심사비 등
	홍보	5	홍보비 (인쇄물, 기념품 등)
<b>사업비 소계</b>		<b>100</b>	
관리비	시설유지 관리비	212	건물유지 관리비 부담액(2022년 수준)
<b>관리비 소계</b>		<b>212</b>	
운영비	인건비	300	관장 및 직원,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부가급여, 퇴직급여 및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등 포함)
	일반운영비	38	일반·기타운영비
<b>운영비 소계</b>		<b>338</b>	
<b>총 합계</b>		<b>650</b>	

※ 2023년 본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VII 위수탁계약 주요내용

### <위탁업무의 범위>

- 대구박물관(이육사기념관 포함) 관리·운영
- 문학자료의 수집·취득·전시 업무
- 대구박물관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수리·모사 및 복원
-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 창작·활동 지원 등
- 기타 대구박물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대구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

## VIII 추진 절차 및 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2. 10월
- 심사위원 및 수탁자 모집공고 : '22. 10월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2. 11월
- 계약서 심사 : '22.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